

광주광역시 서구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증 개정 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0년 12월 8일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0년 12월 11일 회부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2000년 12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지방세과장 조택용)

(1) 제안이유

- 상위법(지방세법, 건설기계저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명시된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
-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별표1)

-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 개정으로 기존에 「납세완납증명·징수유예증명·미(비)과세증명」으로 구분 개별 발급되던 증명을 「납세증명서」로 통합됨에 따라 수수료 명칭 변경 및 삭제
 -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과 「징수유예증명」을 「납세증명서」로 통합하여 명칭 변경
-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수료 항목 신설
 -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3종
-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 제2조, 제4조 개정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 변경
 - 「중기저당권설정등록 및 이전등록신청」을 「건설기계저당권설정등록 및 이전등록신청」으로 명칭 변경 외 1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장재영)

이번에 개정 논의되고 있는 8종 중 4종은 신설이고, 4종은 명칭변경사항임. 그 개정사유는 수수료 징수의 근거법률인 상위법 즉 지방세법과 건설기계저당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명시된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것임.

수수료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의하여 개별적 특수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분을 지변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비용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제128조 제1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제128조 제2항),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제130조 제1항).

수수료 징수 대상사무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에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제1항)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제2항)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그 대상사무라 할 수 있겠으며, 동법 제130조에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한 것 역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따른 수수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에 따라 대상사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고유사무의 경우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하겠으며, 단체위임사무의 경우는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조례의 제·개정으로 수수료 징수가 가능하며,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개별법령에서 그에 따른 수수료를 굳이 조례로 정하도록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밖에는 굳이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고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6조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함.

이러한 맥락에서 신설된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와 명칭변경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음.

신설된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에 대한 의견임.

이번에 신설된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법인),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공인중개사), 중개업개설등록증 재교부,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 총 4종(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수수료는 동법 제37조의3 및 제8조 제4항에 의거 시·도 조례로 규정해야 함)으로서 이들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을 위하여 행하는 사무로서 이에 대하여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3과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수수료도 타구와 비교하여 과소·과중하지도 않는 적정 수준이라 생각함.

4종의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임.

안 별표1중 기존에 납세완납증명·징수유예증명·미(비)과세증명으로 구분하여 개별 발급되던 증명을 납세증명서로 통합하여 수수료의 명칭을 변경 및 삭제하자는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의 개정에 따른 것이고, 중기저당권설정등록 및 이전등록신청을 건설기계저당권설정등록 및 이전등록신청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것은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을 변경한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에 따른 것임. 양자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의 명칭이 변경되어 본조례에 명시된 수수료항목을 정비하자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다만 수수료 징수대상사무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상위법령이 개정 시행된지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시행령의 시행일은 2000년 1월 1일,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의

시행일은 1994년 1월 1일임),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그저 행정부의 표준안만 기다렸다가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며, 위민행정의 차원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임.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적정시기에 개정하여 그 개정된 조례에 따라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라는 것을 명심하였으면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광주광역시서구제 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0년 월 일

제출자 : 광주광역시서구청장

□ 제안이유

- 상위법(지방세법,건설기계저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명시된 수수료항목을 정비하고,
-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 주요골자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1)

-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 개정으로 기존에 「납세완납증명·징수유예증명·미(비)과세증명」으로 구분 개별 발급되던 증명을 「납세증명서」로 통합됨에 따라 수수료 명칭변경 및 삭제 -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과 「징수유예증명」을 「납세증명서」로 통합하여 명칭 변경
- 부동산중개업법제37조의3 개정으로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수료 항목 신설 -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외 3종
-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제2조,제4조 개정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 변경 - 「중기저당권설정등록 및 이전등록신청」을 「건설기계저당권설정등록 및 이전등록신청」으로 명칭 변경 외 1종

□ 참고사항

- 지방세법시행령제19조
-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제2조, 제4조
- 부동산중개업법제4조, 제11조, 제37조의3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 증명 등 수수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 명)			
1. 인감에 관한 증명			
(1) 인감증명	1 통	500원	일제신고 등은 제외
(2) 인감의 개인신고	1 건	400원	
2.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1 통	500원	
(2) 중소기업자	1 통	500원	
(3) 광업·공업·상업	1 통	50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	1 통	300원	
(2) 생산실적	1 통	300원	
(3) 수출실적	1 통	300원	
(4) 납품실적	1 통	300원	
(5) 건물사용	1 통	300원	
(6) 공장원료수요	1 통	300원	
(7)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1 통	300원	
(8) 공장등록증명	1 통	1,000원	
(9) 실수요자증명	1 통	300원	
(10) 원자재(시설재·공업요소)소요량 증명			
· 가 소요량	1 통	3,000원	
· 확정소요량	1 통	1,000원	
(11) 시설보유증명	1 통	300원	
(12)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1 통	500원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의 등·초본교부			
· 대장·문서	1 통	300원	지적 관계 제외
· 토지도면	1 통	300원	
· 건물도면	1 통	300원	
(2) 공부열람			
· 기본료	1시간	1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 초과료	10분당	100원	
(3)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	1 건	100원	
5.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납세증명	1 통	500원	
(2) 납세증명서	1 통	500원	
(3) 세목별 과세증명	1 통	500원	
6. 회계에 관한 증명			
(1) 실적증명(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1 통	1,200원	
7.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 통	600원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통	500원	
1. 일반 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 건	신규1,000원 계속 600원	
(2) 전기(수도)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 건	50원	
(3) 입찰참가신청(발주공사, 물품제조·구매, 용역, 기타계약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 및 계약금액 2,0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을 신청한 자)	1 건	10,000원	
(4)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 건	300원	
(5)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1 건	30,000원	
(6)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공인중개사)	1 건	10,000원	
(7) 부동산중개업개설등록증 재교부	1 건	5,000원	
(8)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1 건	10,000원	
2. 산림관계			
(1)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1 건	500원	
(2) 개간허가증 교부	1 건	500원	
3. 농수산관계			
(1) 축산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 매	2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1) 공장시설 등록·허가신청	1 건	1,000원	
(2) 공업입지지정승인	1 건	1,000원	
(3) 기계(전자)공업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1 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4) 자가용 전기공작물 공사계획인가 및 변경 신청	1 건	1,000원	
5.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1 건	1,000원	
(2) 도시계획사업허가신청	1 건	1,000원	
(3)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 건	500원	
(4) 건설기계저당권 설정등록 및 이전등록 신청	1 건	1,000원	
(5) 건설기계저당권의 변경 또는 말소신청	1 건	1,000원	
6. 보건사회관계			
(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개설신고신청	1 건	30,000원	
(2)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장소이전, 구조 변경, 대표자변경)	1 건	20,000원	
(3)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및 납골장 허가필증 재교부	1 건	500원	
(4) 이용사 및 미용사 신규면허	1 건	2,300원	
(5)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 건	2,000원	
(6) 안경업소개설등록	1 건	20,000원	
(7)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 건	10,000원	
(8) 치과기공소인정신청	1 건	20,000원	
(9)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 건	10,000원	
7. 문화공보 관계			
(1) 출판사·인쇄소 등록신청	1 건	2,000원	
(2) 출판사·인쇄소 등록사항 변경	1 건	1,000원	
(3) 유선방송 수신사업 허가	1 건	5,000원	
(4) 유선방송 수신사업 변경허가	1 건	3,000원	
(5)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1 건	30,000원	
(6)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1 건	15,000원	
(7)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1 건	30,000원	
(8)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 건	15,000원	
8. 채무 불이행자 명부관계			
· 채무불이행자 명부열람 및 등사 (신설 '90. 11. 27)	1 건	300원	열람만 한 경우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도 1건으로 취급

(별표 1)

신·구조문대비표

제 증명 등 수수료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요액	구분	기준	요액
(증명)					
5. (생략)			5.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u>	1통	500원	(2) <u>납세증명서</u>	1통	500원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u>징수유예증명</u>	1통	500원	(4) (삭제) <u>(납세증명서로 통합)</u>	1통	5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신설)			(5) <u>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u>	1건	30,000원
(신설)			(6) <u>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공인중개사)</u>	1건	10,000원
(신설)			(7) <u>부동산중개업개설 등록증 재교부</u>	1건	5,000원
(신설)			(8) <u>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설치신고</u>	1건	10,000원
5. (생략)			5. (현행과 같음)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4) <u>중기저당권 설정등록 및 이전등록 신청</u>	1건	1,000원	(4) <u>건설기계.....</u>	1건	1,000원
(5) <u>중기저당권의 변경 또는 말소신청</u>	1건	1,000원	(5) <u>건설기계.....</u>	1건	1,000원